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7

1990.03.01.제정 1992.02.18.개정 1995.03.01.개정 1996.03.01.개정 1996.03.01.개정 1997.03.01.개정 2001.03.01.개정 2004.03.01.개정 2010.03.01.개정 2010.03.01.개정 2014.02.01.개정 2019.07.16.개정 2020.09.25.개정 2022.04.15.개정 소판부서 : 교무처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교육부 고시,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부산경상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당 자격증 종류 및 학과) 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격증 종류와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치워 정교사(2급) : 유아교육과
 - 2. 실기교사 :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실기교사 표시과목 관련학과 및 표시과목 결정승인 을 받은 학과(계열)
- 제3조(이수대상)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하 '교원자격과정'이라 한다.) 이수 대상 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학과(계열) 졸업(예정)자로 한다.
- **제4조(과목이수)** 교원자격과정 이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교직과목 및 전공, 기본이수영역과 목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정교사(2급)

- 가.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 및 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는 "별표1"의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
- 나.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는 "별표1"의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이상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교위자격증발급 규정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7

2019.07.16.>

- 2. 실기교사 : 교육학개론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실기교 사 관련 학과별 기본이수영역과목 6학점 이상
- **제5조(자격제한)** 교원자격과정을 이수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 1. 유치원 2급 정교사
 - 가.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중 전공성적 평균이 75점 미만인 자, 교직평균성적이 80점 미만인 자. <개정 2019.07.16.>
 - 나. <삭제 2019.07.16.>
 - 2. 실기교사 :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실기교사 표시과목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제6조(자격증 교부 신청) 본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2. 성적증명서
 - 3. 주민등록초본
 - 4. 국가기술자격증(해당 자격종목에 한함)
- 제7조(기재사항 정정신청)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 1. 기재사항 정정원
 - 2. 교원자격증 원본
 -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제8조(재교부신청) 교원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 제9조(수수료)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최초 발급(졸업 시): 900원
 - 2. 재교부 또는 정정 발급: 500원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4/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교무처』를 『교학처』 로 『산학처』를 『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5.12.24.)에 의하여 『산학·취업처』를 『산학 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5/7

[별표 1]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요건 기준 변경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제목 개정 2019.07.16.>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 발급요건 기준표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교직과정의 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이수기준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4학점, 교육실습 4학점)

영 역	과 목	소요최소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특수아동의 이해(2학점이상) 교직실무(2학점이상)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2학점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4학점
기본이수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관찰및실슬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작교육 유아등동작교육 부모교육, 아동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자격검정기준

- 교직과정이수기준을 이수하고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의 전체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6/7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 발급요건 기준표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

*교직과정의 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이수기준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3과목이상,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이수(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점 이상 이수(교식이론 12학점, 교식소양	<u> </u>
면 명	과 목	소요최소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특수아동의 이해(2학점이상) 교직실무(2학점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학점이상)	6학점 이상(3과목 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2학점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4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돌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당보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장및실습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자격검정기준

- 교직과정이수기준을 이수하고 전공평균성적 75/100점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문서번호	BSKS-1-1-35
제정일자	1990.03.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7/7

[별표 2] <삭제> <2019.07.16.>